

의안번호	2204025
의 퇴 인	김태년 의원
회 답 일	2024. 12. 6.
추계번호	24A37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5조의8 신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5조의5제1호¹⁾에 따라 중소기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함(제1항)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함(제2항) 정부의 적립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5조의8 신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하 “청년공제사업”)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
- 청년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의 청년공제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이 동일하며, 해당 사업은 정부가 가입 청년 1인에 대하여 1,080만원(3년간 7회 분할 적립)을 지원하였음
 - * [참고자료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및 실적
-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공제 가입자 수 추정치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정부 적립금 지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가입 인원 및 지원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청년공제사업과 동일한 운영 구조를 가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만 1,374명이 신규 가입하여 누적 총 15만 6,869명이 가입하였으며, 정부 적립금 지원 예산은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조 3,543억원이 집행되었음(실집행 기준)
 - * [참고자료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및 실적
 - 재정소요 산출을 위해 해당 사업 실적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청년도약계좌 등 유사한 취지의 다른 사업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과거 실적을 준용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소득 수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적립 혜택 등을 부여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정안에 따른 청년공제사업과 지원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약 152만 6천명이며, 정부기여금 예산은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747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음(실집행 기준)

* [참고자료 2] 청년도약계좌 사업 개요 및 실적

- 또한, 안 제35조의8제3항²⁾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 적립금 지원 단가는 기업 규모나 청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 차등 지원 기준과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
- 이에 청년공제사업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국가재정 지출 증가분)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2) 안 제35조의8(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채직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5조의5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채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적립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개요 및 실적

□ 사업개요(2018~2022년, 한시사업)

- 내용: 청년재직자, 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월 12만원 ×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월 20만원 ×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 적립 (정액, 7회 분할)
- 가입대상: (기업)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재직자(만 34세 이하)

□ 사업 변천 과정(추진경위)

-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고용 촉진 방안」 과제 반영('18.3)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18.6)
- 「청년특별대책」('21.8)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을 '22년까지 1년 연장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22.12)에 따른 후속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설('23.2)
 - ※ 지원대상, 지원내용, 적립구조 등의 내용은 사업추진('18~'22년) 기간에 변경된 바 없음

□ 연도별 사업실적(2018~2024년 현재)

- 연도별 가입자 및 만기 환급 대상자 수

(단위: 명)

연도	신규 가입자	가입자 누계	만기 환급 대상자
2018	36,031	36,031	—
2019	37,358	73,389	183
2020	32,087	105,476	659
2021	30,422	135,898	708
2022	20,971	156,869	985
2023	—	156,869	13,322
2024.10	—	156,869	17,257

* 2022년 이전 만기 환급 대상자는 내일채움공제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 인원임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집행액(집행률)		실집행액(실집행률)	
2018	89,719	89,719	(100.0)	78,386	(87.4)
2019	202,712	202,712	(100.0)	202,624	(100.0)
2020	239,191	239,191	(100.0)	239,031	(99.9)
2021	313,401	313,401	(100.0)	313,357	(100.0)
2022	274,984	274,984	(100.0)	274,943	(100.0)
2023	186,575	186,575	(100.0)	159,994	(85.8)
2024.10	106,194	88,582	(83.4)	85,945	(80.9)

○ 연도 말 기금 조성액(정부/근로자/기업 구분, 잔액)

(단위 : 백만원, %)

연도	정부	근로자	기업	계
2018	70,068 (67.3)	12,779 (12.2)	21,298 (20.5)	104,145 (100.0)
2019	185,880 (48.8)	73,327 (19.2)	122,213 (32.0)	381,420 (100.0)
2020	226,286 (43.8)	108,715 (21.1)	181,191 (35.1)	516,192 (100.0)
2021	297,584 (42.6)	153,410 (21.9)	248,495 (35.5)	699,489 (100.0)
2022	260,834 (35.7)	178,702 (24.4)	292,232 (39.9)	731,768 (100.0)
2023	151,908 (30.1)	134,648 (26.6)	218,939 (43.3)	505,495 (100.0)
2024.10	86,911 (29.7)	74,470 (25.4)	131,480 (44.9)	292,861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2] 청년도약계좌 사업 개요 및 실적

□ 사업개요

구 분	내용
가입 대상	19~34세 청년 ¹⁾ 중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²⁾ ,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주: 1)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2)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는 이자소득 비과세만 지원
상품 내용	매월 최대 70만원 이하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한 5년 만기 적금
지원 내용	이자소득 비과세, 정부기여금 지급
금리	최대 6%

□ 사업 변천 과정(추진경위)

구 분	내용
상품출시 (2023.6.)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2024.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납입한도 (2024.1.)	청년도약계좌 연 납입한도는 840만원 이하임. 단,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음
가구소득 (2024.2.)	기준 중위소득 기준 완화(180%이하 → 250% 이하)
개인소득 (2024.3.)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지 않음
특별중도해지 (2024.4.)	기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가입자의 혼인,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사유 추가
중도해지금리 (2024.4.)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 기본금리 적용

□ **개인소득구간별 가입자 수**

○ 청년도약계좌 2024년 10월 말 기준 152.6만 명 가입

(단위: 만명)

개인소득 구간		2023년 가입인원 수	2024.1~10월 가입인원 수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31.9	50.8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11.0	29.3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2	15.8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1.7	5.1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0.3	0.5
합계		51.1	101.5

□ **정부기여금 예산 집행액 및 총 조성액(배정액)**

○ 2023년 정부기여금 예산배정액 344,037백만원 중 실집행액은 43,221백만원

○ 2024년 정부기여금 예산현액 302,993백만원* 중 실집행액은 231,493백만원
(‘24.10월말 지출월 기준)

* ’24년 정부기여금 배정액은 359,043백만원이나 내역변경(△56,050백만원)으로 금액 조정

자료: 서민금융진흥원